

고급정책연구소 운영규정

제정 2008. 3. 31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(이하 "학회"라 한다) 정관시행세칙 제8장의 규정에 의거 고급정책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조직·예산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업무) 연구소는 학회가 수행하는 원자력기술 및 정책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사업 개발, 자문, 및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3 조(조직 및 운영) ① 연구소의 조직은 연구과제 중심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인력은 전문분야별 회원중에서 발탁하여 활용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는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학회의 직원, 시설, 장비 및 기술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 4 조(예산) ①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학회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은 연구소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.

제 5 조(업무보고 등) ① 연구소장은 매분기별 또는 중요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을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소장은 이사회 및 회장에 대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조(준용 등) ① 연구소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소장이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)(폐지규정) “부설원자력기술정책연구소 운영규정”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